

제410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9월21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7)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3)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
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7)
1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0)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3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4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4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42.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3.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4.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제출 요구의 건
45.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 3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7) 3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3) 3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 3
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3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 3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 3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 3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4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4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7) 4
1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4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4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4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4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4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4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4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0)	4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4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4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4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4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4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	4
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4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4
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4
3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4
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4
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	4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	4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4
4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4
4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4
43.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44.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8
45.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9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소위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7)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7)

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33)

4.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01)

6.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2)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85)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45)

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25)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6)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8)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7)
14.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20)
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36)
1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30)
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06)
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56)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1)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63)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0)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9)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5)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8)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2)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97)
2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56)

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40)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3)
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51)
34.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1)
3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1)
3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23)
3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69)
3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2)
4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22)
41.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89)

○위원장 장제원 의사일정 제1항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박성중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성중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장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총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향자 의원, 윤영찬 의원,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하며, 과학영재학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모 외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역시 미리 공지하도록 추가하고, 공지 내용에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가하였으며, 적용례를 부칙으로 추가하여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용호 의원, 이정문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사전 협의의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였으며, 그 외 인허가 등의 제의 기준과 효과에 관해서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 신고수리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해체계획서 초안 공람 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기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의 신속한 통보 등 공개 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되 원안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에 대한 공개 의무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제원 박성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41항까지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이 중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통과시킨 법이 많아 가지고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법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민정 의원, 이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필모 의원, 변재일 의원, 김영식 의원, 우상호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석준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을 조정한 내용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할 때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관련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및 관련 자료 비치 위반에 대해 선 행정처분 후 형사처벌 도입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형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다음,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

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ICT 규제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률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28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로 41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 되는 그런 좋은 법안들 속도감 있게 잘 여야 합의로 통과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래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장제원 상정하지 마요? 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승래 위원 예.

○위원장 장제원 하시지요.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거기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보도 과정에서 MBC는 기자연합회의 취재보도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공영방송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조 탄압행위, 부당인사 등을 단행하였으므로 시정할 것’ 이것을 우리가 동의한 바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지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경미한 자구 수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기재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정 자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박성중 간사님.

○박성중 위원 특별히 우리한테 뭐 의견이 없었는데 실무적인……

○위원장 장제원 말씀하세요.

상정하지 말고 더 협의하셔서 상정하도록 할까요?

○박성중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 간사님께서 상정 자체를 좀 더 의논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오늘은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단말기에 있습니다. 단말기에 있다고 하네요, 종이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으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3.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장제원 의사일정 제43항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 일시, 대상, 방법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이고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3개 기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장제원 의사일정 제44항 2023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업무현황 자료 등 국정감사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어제 17시 기준 총 3278건의

자료 요구가 집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9월 27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자료제출 관련해서인데요.

이미 한참 전에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권태선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 또 정미정 EBS 이사 해임과 관련해서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안전 그리고 관련 부속서류 일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로는 해당 안전은 비공개 자료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지금 법률에 의해서도 군사·외교·대북 관계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들은 제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제원** 우리 기관장님들께서는, 국정감사라는 엄중한 국회의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24분)

○**위원장 장제원** 의사일정 제45항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차후 간사 간에 합의가 되는 대로 추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관증인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장, 국장급, 부서장급 이상 직원 등 총 315명으로 국정감사 계획서의 기관별 일정에 따라서 출

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기관별 증인 명단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배부된 자료대로 기관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인사이동 등에 따른 기관증인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조승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정리한 것인데, 저는 국정감사는 항상 비유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건 정부를 상대로 한 일종의 종합건강검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각 기관의 감사들이 내부에서 일종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검진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출연연이나 직속 기관들에 대한 감사들의 출석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만 추가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신 것 추가해서 가결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과방위에서 관련 법안이 41건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관장님께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조성경 1차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조성경**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오늘 광주과학기술원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방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광주과학기술원은 AI 영재학교와 같은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해 앞으로 과학영재를 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입주

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를 합병할 때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관련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비치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전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존경하는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신 법률안이 통과되면 집합건물에서의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 운영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정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 상향 근거가 마련되어 불법스팸 전송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판매점 사전승낙제도가 개선되어 유통점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책임이 강화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제원 위원장님과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국희 원안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 유국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박성중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과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을 통해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원자력사업자의 장애방어조치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지역 주민과 관찰지자체의 장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제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조승래 위원 잠깐만요. 저 한 말씀만……

○위원장 장제원 조승래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회의 시간이 11시 아닙니까? 11시인데 정부위원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입장하면 되겠습니까? 뭐 두 분이 같이 대화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제가 시계를 딱 확인했더니 11시 2분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건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정부위원들은 다 착석해 있는데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만 늦게 도착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부위원들이 그렇게 착석 자체를 늦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부위원들에게 단단하게, 좀 더 엄하게 시간을 지켜 줄 것을 요

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박성중 간사와 제가 각각 법안소위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안 상정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장제원 합의를 좀 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런데 상정 요건이 되면 상정하는 것이지 무슨 이 법은 안 된다,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해 주시고 소위로 보내 주시면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그것 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사회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저희들…… 되겠습니까? 그건 괜한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완주 위원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박완주 위원 이제 하려고요.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법안 상정을 상정 요건이 되는 것을…… 그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떠나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바대로 좀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 오늘 오랜만에 여야 합의하에 법안이 45개…… 경축드릴 일이에요, 사실은. 다른 상임위 같으면…… 그런데 어쨌든 노고에 우리 여야 간사님하고 소위원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9월 4일이에요. 오늘 21일인데, 계류 중인, 미상정된 게 96건입니다. 과기부가 57건, 방통위 36건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방금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일인가요? 숙성 기간 지나면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체토론을 할 건지는 그 당시 보시면 되고, 소위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여야 간사님들이 뭘 우선 논의할 건가 이런 건 통상적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제 마지막 21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감 끝나고 우리 행정실에서 검토보고서도 써야 되는 거고 등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발의해 놓은 의원님들 것에 대해서는, 쟁점 법안도 있지만 민생 법안도 있고요. 사실은 여야의 무쟁점 법안도 있기 때문에 상정을 먼저 하시고 긴급하게 우리

위원장님 주재하에 양당 간사님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국회법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제원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박성중 위원 우선 오늘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조승래 간사님께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안 상정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의 정신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야당에서 특히 법안 상정 중에 KBS 수신료를 한전에 통합시켜서 하는 그런 법안, 또 방통위원장을 인수위에 관련되는 분은 전부 다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이, 좀 쟁점 법안이 있어 가지고 그 2건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상정하자 했는데 야당에서 오히려 상정을 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같이 상정하겠다 해서 좀 늦어진 겁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의 30일 규정이라든지 또 여야 간 간사 합의 정신을 지켜서 앞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기부장관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 야당에서 도장을 안 찍어 줘 가지고 지금 무단 불출석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방통위 위원장이 국회에 이렇게 참석하면 부위원장은 지금 국제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참석 안 하면 이게 무단 불출석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관계, 그다음에 원안위도 지금 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굳이 사무처장이…… 지금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관련해서 중요한 심사 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불출석으로 처리되는, 무단 불출석이 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유연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 저 30초만……

○위원장 장제원 예, 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제가 법 조항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했는데 국회법 59조의2를 보면요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은……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조항이에요.

아니, 좀…… 합의해서 하는 건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합의 안 하면 소위원회에서도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절차법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기준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존경하는 우리 장제원 위원장님, 위원장 말으신 이 하반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은 상정 안 하면 30일 뒤면 자동상정이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외 규정은 양당 간사 합의하에 위원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고 소위에서 논의할 거는 간사 간 조정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장제원 우리 여야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도 국회법 좀 지켜 주세요.

○위원장 장제원 지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야 간사님들도 좀 합의를 시원시원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노력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겁니다.

○허은아 위원 내로남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계속 했잖아요.

○조승래 위원 우리가 여당 할 때……

○위원장 장제원 자, 국무위원들 앉혀 놓고……

○조승래 위원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한 적이 한 건이 없어요. 뭘 소리 하는 거예요?

○허은아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신다잖아요.

○위원장 장제원 기관장 앉혀 놓고 우리끼리……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고민정	金炳旭	민형배	박성중
박완주	박찬대	변재일	윤두현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장제원	정필모	조승래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청가 위원(1인)

김영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이정은
입법심의관	서덕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조성경
제2차관	박윤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기획조정실장	구혁채
연구개발정책실장	노형원
네트워크정책실장	홍진배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류광준
정책기획관	송재성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조선학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임요업
미래인재정책국장	황판식
정보통신정책관	송상훈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창림
통신정책관	김경만
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전파정책국장	최우혁
성과평가정책국장	김유식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경영기획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부위원장	이상인
사무처장	조성은
기획조정관	배중섭
방송정책국장	김영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기획조정관	손명선